

# 뉴욕 어린이용 주얼리 법안 통과

“

미국 뉴욕주는 최근 어린이 주얼리 제품의 납을 규제하기 위해 의회 법안 A06041을 제정했다.

○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용 주얼리 제품은 아래의 경우 적어도 하나의 구성부분에 납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

- 제품 내 포함된 모든 구성부분 중에 총 납 함량이 중량비 40 ppm ~600 ppm 미만일 경우
- 연방 법령(CPSIA, 기질에 대한 납 함량 100 ppm)
- 주 법령의 보다 낮은 기준의 납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

○ 경고문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.

- "WARNING : CONTAINS LEAD. MAY BE HARMFUL IF EATEN OR CHEWED. COMPLIES WITH FEDERAL STANDARDS."

("경고 : 납이 포함되어 있음. 먹거나 씹을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. 연방 표준서를 준수하기 바람.")



- 경고 문구의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어린이용 주얼리 제품은 다음과 같음.
  - ✓ 연방 법이 주 정부의 권한을 선점하여 경고방식을 관리하는 경우
  - ✓ 어린이용 주얼리 제품 중 납을 포함한 구성부분이 CPSC 정의에 따라 일반적, 합리적, 예측 가능한 사용 및 남용을 통한 접촉이 불가한 경우
  - ✓ 문제가 있는 구성부분이 CPSC에서 지정한 제3자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면제된 경우
  - ✓ 재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소비자용으로 소비자에 의해 배포된 것
- 새로운 법에 따라 주얼리는 사람이 착용하는 다음의 장식품 중 하나를 의미함.
  - ✓ 발찌, 팔찌, 브로치(brooch), 체인(chain), 크라운(crown), 커프 링크스(cuff link), 헤어 액세서리, 귀걸이, 목걸이, 장식핀, 반지, 바디 피어싱(body piercing), 전시 또는 장식용의 마우스 피어싱(mouth piercing)
  - ✓ 상기 명시된 주얼리 제품의 장식품(Charm), 비드(bead), 체인(chain), 링크(link), 펜던트(pendent) 또는 기타 구성부분
  - ✓ 상기 명시된 주얼리 제품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거나 분리가 가능한 신발 또는 의류에 부착된 장식품(Charm), 비드(bead), 체인(chain), 링크(link), 펜던트(pendent) 또는 기타 부착물
  - ✓ 시계를 장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시계 자체를 제외, 시계가 상기 명시된 주얼리 제품의 구성부분으로 장식된 것

◆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발효